

부산지방법원 2021. 7. 22 선고 2020가단9738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혜리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1. 6. 10.

판 결 선 고 2021. 7. 2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69,673원과 이에 대하여 2021. 4. 17.부터 2021. 7. 22.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는 피고가, 나머지 1/10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7,261,3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4.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9. 5. 22. 피고로부터 168,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20. 6. 29. 피고에게 240,000,000원을 변제하였는바, 원고의 변제액을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이자와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면, 원고의 채무는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피고에게 27,261,370원을 추가로 변제한 셈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7,261,37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9. 5. 22. 피고의 동생인 C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변제기 2019. 8. 22., 이자 월 2%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3개월치 선이자 1,200,000원과 C에 대한 수수료 20,000,000원을 공제한 168,0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원고는 2020. 6. 29. 피고에게 24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나. 판단

(1) 이자제한법 제3조는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법령이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을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위 약정 당시 최고이자율은 연 24%이다.

한편, 이자제한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예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 기타 여하한 명칭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에 관하여 채권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채권자가 할인금, 소개료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소개료의 명목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된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023 판결 참조). 나아가 이자제한법 제4조 제2항에서는 채무자가 금전대차와 관련하여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의무 발생의 원인 및 근거법령, 의무의 내용, 거래상 일반원칙 등에 비추어 그 의무가 원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할 성질인 때에는 이를 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중 C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돈은, 피고와 C의 관계, 원고가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할 대여금 중에 이를 공제하고 피고의 C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일부 변제에 갈음하여 실제 피고가 지급한 돈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여금과 관련된 것으로서 그 성격상 금전대차의 대가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공제한 수수료 상당의 돈은 피고 자신이 지급하여야 할 것을 원고에게 전가시킨 것으로서 이자제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이자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선이자 및 간주이자로서의 중개수수료 금액이 원고가 실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24%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한다면, 이자제한법 제3조에 따라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된 것으로 보고 위 규정에 따른 대여금 원금을 다시 확정하여야 한다.

(3) 원고가 실제 수령한 168,000,000원을 원본으로 하여 선이자 지급 기간인 3개월치 최고이자 10,080,000원($=168,000,000\text{원} \times 2\% \times 3$)이므로, 이를 초과하는 선이자 21,920,000원은 원본에 충당되어야 하고, 결국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은 178,080,000원($=200,000,000\text{원} - 21,920,000\text{원}$)이 된다.

(4) 따라서 원고는 원금 178,080,000원과 선이자 지급기간 다음날인 2019. 8. 22.부터 변제일인 2020. 6. 29.까지 313일 동안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36,650,327원($=178,080,000\text{원} \times 24\% \times 313/365$, 원 미만 버림) 합계 214,730,327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가 이를 초과하여 지급한

25,269,673원(=240,000,000원-214,730,327원)은 부당이득으로서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25,269,673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2021. 4.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송달받은 다음날인 2021. 4. 17.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21. 7. 22.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판사 오규희